

법에 정한 '분만수당' 줘야 한다

의보조합·보사부 지급 기피

현행 의료보험법은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하고 집에서 출산한 여성에게는 별도로 분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관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이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

분만수당은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분만한 경우에 5만원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중 '분만수당 지급'을 정관에 명문화한 곳은 거의 없다.

조합들은 "보사부에서 우리나라

라 급여 사정상 분만수당을 주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단 유보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정관에 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86년 조합에 분만수당 지급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 보험급여과 양명생 과장은 "컴퓨터 단층촬영

이나 초음파검사를 의료보험 대상에 넣고 1백80일로 제한된 급여일수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분만수당 지급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82년 2천99명에게 3천8백85만원이 지급되었던 분만수당은 84년 2천36만원, 85년 2천4만원 등으로 줄어들다 86년부터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89년에 계산착오로 5천·11만원이 '분만수당'으로 지급됐을

을 감안, 출산 때도 후유증·산후 관리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분만수당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만수당외에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분만했을 때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분만비'도 지급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의료보험법 제3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 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했을 때는 분만비를 지급하도

"산후관리 비용등 감안 혜택 받아야" 가정분만때 받는 분만비 홍보대책 시급

뿐이다.

보사부 의료보험국쪽에서는 아예 분만수당을 없앨 계획이라고 까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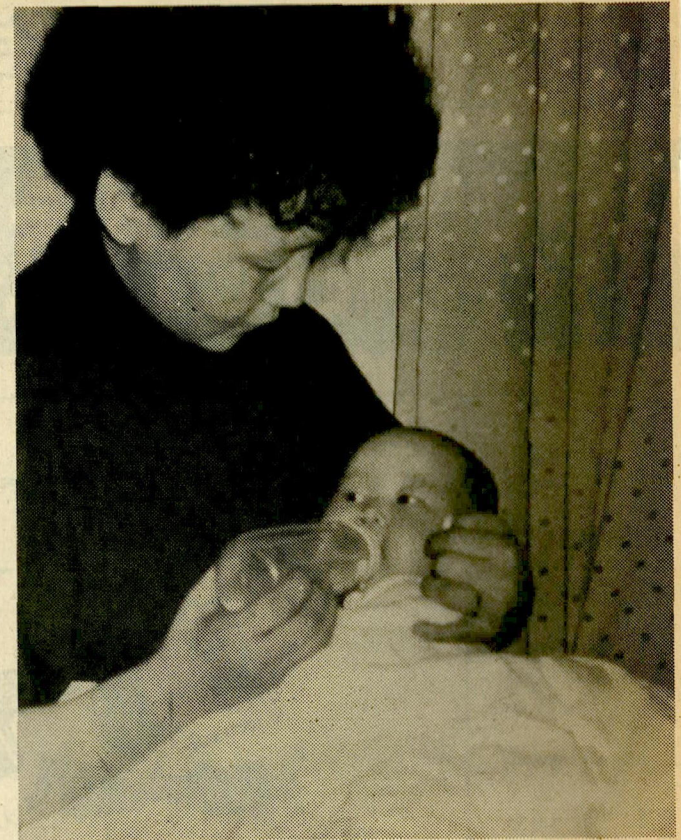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여성조합원들이 많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한 간부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이 힘들다 하더라도 해마다 후자가 늘어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지급이 가능한 데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핑계로 정관에 넣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의료보험에서 조합원이 숨졌을 경우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비 지급액수도 81년 3만7천9백11건·12억2천9백32만1천원에서 85년 7천3백48건·2억7천7백38만7천원, 89년 4천8백33건·2억4천5백92만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집에서 분만하는 여성의 수가 해마다 줄어가고는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시설통만율이 농촌지역 87%, 도시지역 94%로 아직도 자가분만율이 꽤 높아 의료보험비를 내고서도 '분만비'를 제대로 못 받은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



사문화돼 버린 '분만수당'을 모성보호를 위해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

조합쪽이 홍보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과 이웃사람 2명의 보증이 있으면 초산의 경우 5만4백원, 재산은 4만6천4백원의 '분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조합원들은 거의 없다. 최근 전국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장순자)가 전북지역 여성농민 4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민 건강과 의료보험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분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만큼 의료보장 차원에서 '분만수당' '분만비'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경 기자>